투자위험등급 6등급(매우낮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하이자산운용㈜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3년 07월 31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3년 08월 2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이 투자신탁은 2019년 06월 2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02-707-4200, www.hi-asset.com),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02-2003-9000, www.kofia.or.kr)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7. MMF펀드(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예금과 달리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

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 해지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해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전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 투자대상, 투자제한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 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 이익 배분, 과세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2023.07.31)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펀드코드: CR819]

투자위험등급 : 6등급[매우 낮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하이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6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 이자율변동위험, 신용등급하락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1.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성된 신탁재산을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 투자전략
-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 거시경제지표 및 채권시장전망에 근거하여 펀드의 잔존만기(듀레이션)의 탄력적 조절을 통해 펀드의수익률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 펀드의 위험관리는 엄격한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통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시 입출금 되는 단기금융 투자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의 유동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단기금융(MMF),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투자비용

구분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총보수·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투자신탁	없음	0.10	0.04	-	0.1046	11	22	34	59	134

주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2)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수익률)

구분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8.01 ~ 23.07.31	21.08.01 ~ 23.07.31	20.08.01 ~ 23.07.31	-	
투자신탁(%)	2019-07-02	3.34	2.28	1.72	-	1.60
비교지수(%)	2019-07-02	3.25	2.22	1.64	-	1.50
수익률 변동성(%)	2019-07-02	0.06	0.15	0.17	-	0.15

주1) 비교지수: CALL × 10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수익률 (단기금융, 단위:%)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기구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강동민	1983	책임(수석)	9개	41,084억원	-	-	3.34	2.28	11개월
신정섭	1989	부책임(선임)	14개	54,100억원	3.34	-	3.34	2.28	6.7년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 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 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재산 가치변동에 따라 투자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이자율변동위험(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하는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격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PF, 예금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위험(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 및 시장상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실제 수익률이 목표 만기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신용보강이 된 경우 신용보강회사에 의해 위험이 통제되나, 신용보강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 (D+2)에 공고되는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세제혜택 및 과세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하이자산운용㈜ 대표번호 : 02-707-42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i-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매출 총액**	10조좌
효력발생일	2023년 08월 25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홈페이지 참조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hi-asset.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i-asset.com)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4호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CR81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단기금융(MMF)
다. 개방형 · 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 · 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표시 : 해당 없음
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해당 여부: 해당 없음

주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용어에 관한 사항은 [참고] 펀드용어의 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 좌까지 모집이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최초 설정시 1좌당 1원)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령상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추가형으로 모집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2019년 6월 24일부터 모집을 개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의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hi-asset.com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주2) 그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4호

(금융투자협회펀드코드 : CR81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시행일	주요 내용
2019년 07월 02일	최초설정
2019년 09월 25일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 반영 「주식·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정정사항 반영
2020년 07월 02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이경원)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변경 반영
2020년 09월 02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0년 10월 08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조성원→이경원)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이경원)
2021년 04월 20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오은주)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1년 08월 02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오은주→이지원)
2021년 09월 10일	집합투자업자 사명 변경에 따른 펀드명칭, 홈페이지주소 변경 ・DGB자산운용㈜→하이자산운용㈜ ・DGB 법인 MMF 투자신탁 4호→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www.dgbam.com→ www.hi-asset.com
2021년 10월 0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경원→이지원)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이지원)
2021년 11월 16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강민찬)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2022년 07월 01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강민찬→신정섭)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내용 갱신 재무제표(반기)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2022년 07월 13일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내용 갱신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 수익률 변동성)
2023년 03월 31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이지원→신정섭)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삭제(신정섭)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23년 04월 01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사항 반영(가중평균잔존만기 단서 조항 삭제)
2023년 05월 20일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신정섭 →강동민)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추가(신정섭)
2023년 08월 25일	정기결산에 따른 내용 갱신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사항 반영(0.05%→0.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반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주1)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2)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음을 안내한 후 자세한 내용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하이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 층 02) 707 – 4200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3.07.31 현재)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강동민	1983	책임 (수석)	11개월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3.04~현재) 한국투자신탁운용 FI운용1부(22.06~23.04) MBC 문화방송 재무운영부(22.03~22.05) NH농협은행 신탁부(18.03~22.03) 대신증권 신탁부(16.03~18.03)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1개	190억원
성명	생년(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이력	
신정섭	1989	부책임 (선임)	6.7년	하이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22.06~현재) 하나UBS자산운용 채권운용부(20.06~22.06) BNK자산운용 채권운용부(16.07~20.06) 유진투자증권 채권영업팀(15.12~16.06)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	-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준일: 2023.07.31 현재)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단기금융) (%)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강동민	9개	41,084억원	-	-	3.34	2.28
신정섭	14개	54,100억원	3.34	-	3.34	2.28

주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 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조성원	2019.07.02. ~ 2020.10.07
이경원	2020.10.08 ~ 2021.09.30
이지원	2021.10.01 ~ 2023.03.30
신정섭	2023.03.31 ~ 2023.05.19
강동민	2023.05.20 ~ 현 재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운 용 기 간
이경원	2020.07.02. ~ 2020.10.07
오은주	2021.04.20 ~ 2021.08.01
이지원	2021.08.02 ~ 2021.09.30
강민찬	2021.11.16 ~ 2022.06.30
신정섭	2022.07.01 ~ 2023.03.30
신정섭	2023.05.20 ~ 현재

(주 1) 최근 3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법인용), 개방형, 추가형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법인용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조성된 신탁재산을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자의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 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구분	투자대상종류	주요내용
①	양도성예금증서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

②	채무증권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은행에서 발행한 것에 한하며, 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기업어음증권. 단,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③	어음 등	남은 만기 1년 이내인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
④	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⑤	단기대출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⑥	금융기관 예치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⑦	환매조건부매도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⑧	단기사채등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따른 단기사채등
⑨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거래	법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신용평가등급의 제한 등

-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채무증권(양도성 예금증서 및 금융기관이 발행・매출・중개한 어음 및 채무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2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중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한다)이 최상위등급 또는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이하 "상위 2개 등급"이라 한다) 이내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신용평가등급은 세분류하지 않은 신용평가등급을 말합니다.
-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증권은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거나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1.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채무증권
  2. 담보 또는 처분옵션을 감안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3.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채무증권으로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한다고 인정하는 채무증권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운용하는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신탁계약서 제18조제2항제1호의 보증인의 신용평가등급을 포함한다)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당해 채무증권에 대한 신용위험을 재평가하고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수익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 편입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 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신탁계약서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편입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상위 2개 등급에 상응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증권을 지체없이 처분하거나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나. 투자제한

구분	주요내용
①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②동일종목투자	1.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이하 이 호에서 같습니다)을 제외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에 운용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가. 채무증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로 하며, 만기 80일 이상 100일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5%까지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나. 어음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로 합니다) 다. 발행 당시 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단기사채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다만,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경우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0.5%로 합니다). 이 경우 가목의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2. 제1호의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③동일거래 상대방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의 평가액과 그 동일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그 밖의 거래 금액의 합계액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또는 그 밖의 거래 당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가. 자금중개회사를 경유하여 신용평가업자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에 단기대출한 금액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매조건부매수 (1) 만기 30일 이내일 것 (2) 거래상대방의 신용평가등급이 상위 2개 등급 이내인 금융기관일 것 (3) 대상증권은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최상위등급의 채무증권일 것 다. 각 집합투자기구가 자산총액의 5%이내에서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를 취득한 금액
④구조화된 자산 등에의 투자금지	•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 상기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
⑤증권의 대여 및 차입 금지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⑥가중평균잔존만기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60일을 초과하는 행위
⑦국채증권의 만기제한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⑧집합투자증권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⑨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 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⑩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1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현금 2. 국채증권 3. 통화안정증권 4. 잔존만기가 1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양도성 예금증서 • 정기예금 나.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사채권(법 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 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합니다) • 기업어음증권 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합니다) 라. 단기사채 5. 환매조건부매수 6. 단기대출 7.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금융기관에의 예치	

⑪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합산한 금액이 투자신탁재산의 30%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상기 ⑩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 2. 잔존만기가 7영업일 이내인 자산으로서 상기 ⑩ 4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 3. 상기 ⑩ 5호부터 7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⑫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산에 대한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하 "안정적 자산 비중" 이라 한다)이 30%이하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1. 현금 2.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통화안정증권 또는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 3. 양도성 예금증서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다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5.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단기사채 또는 어음(기업어음증권을 포함한다) 6. ③의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단기대출 또는 환매조건부매수.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대상증권이 국채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이며 최소증거금률이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비율 이상인 경우에는 ③의 나목의 (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기업어음증권,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 또는 단기사채

[운용 및 투자제한의 예외]

①집합투자규약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증권 또는 그 밖의 거래에 대해서는 편입비율을 축소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펀드의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신용등급이 우량한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 등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2) 거시경제지표 및 채권시장전망에 근거하여 펀드의 잔존만기(듀레이션)의 탄력적 조절을 통해 펀드의 수익률 관리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3) 펀드의 위험관리는 엄격한 신용평가등급의 제한을 통한 안정성을 강화하고 수시 입출금 되는 단기금융 투자신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펀드의 유동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비교지수 : [CALL]*100%

주)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 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나. 수익구조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단기금융상품의 이자율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아닌 장부가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하고 있는 투자증권 등의 취득 당시의 유효이자율 등에 의해 수익률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특히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가치에 직접 영향을 주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이자율변동위험 (시장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무증권 등의 이자율변동에 의한 가격변동 및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집합투자기구의 고유한 형태 또는 투자전략 및 투자방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위험	집합투자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채무증권 등의 신용평가등급이 최상위등급에서 차하위등급으로 하락한 경우, 신용평가등급이 하락하여 상위2개 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또는 신용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채권, 어음 등을 지체 없이 처분하거나 시가로 가격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신탁재산의 가치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장부가와 시가와의 괴리조정에 따른 기준가격 변동위험	장부가격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이 급등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화증권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기초자산(대출채권, 매출채권, 부동산 PF, 예금 등)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발행되는 유동화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동화자산의 현금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용위험(기초자산 발행사의 파산 및 채무불이행 등) 및 시장상황에 따른 기초자산의 가치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유동화증권의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유동화증권은 기초자산의 조기상환으로 인해 만기 이전에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 실제 수익률이 목표 만기수익률보다 낮아질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에 신용보강이 된 경우 신용보강회사에 의해 위험이 통제되나, 신용보강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투자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투자위험 (일반위험 및 특수위험 외에 일반적으로 발생가능성이 낮거나 집합투자기구 가치변동에 영향이 비교적 작은 위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투자의사결정시 반드시 참고하여야 할 위험으로서 이 집합투자기구가 노출된 위험을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유동성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의 '나. 환매'의 '(7)수익증권의 환매연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이 투자신탁은 설정 후 3년이 경과(최근 결산일 기준)한 투자신탁으로 잔존기간이 짧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하여 다른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상품이며, 실제 수익률 변동성(최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가 **0.16%** 수준이므로 하이자산운용㈜은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을 **6등급의 투자위험등급 중 매우 낮은 위험인 6등급**으로 분류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 부담없이 수시로 입출금 하고자 하는 법인투자자를 위한 상품입니다.

- 추후 매 결산시마다 변동성을 재측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는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을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수치로써,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펀드의 위험등급 적용을 위해 산출한 실제 연환산 표준편차를 의미합니다.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하며, 수익률 변동성 값이 클수록 투자신탁의 위험은 커집니다.

※ 위험등급변경 내역

변경일	변경 전 위험등급	변경 후 위험등급	변경사유
2022.07.13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 설정기간 3년 경과에 따른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투자대상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실제 수익률 변동성)

[하이자산운용㈜의 위험등급 분류기준 : 수익률 변동성 기준]

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등급** (높은 위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4등급** (보통 위험)	**5등급** (낮은 위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1) 상기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은 하이자산운용㈜의 내부기준으로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수익률변동성(표준편차) :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해 부여되는 위험등급으로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도 가능합니다.

2) 매입의 제한

이 투자신탁은 **법인투자자 전용** 단기금융투자신탁으로 **개인투자자는 매입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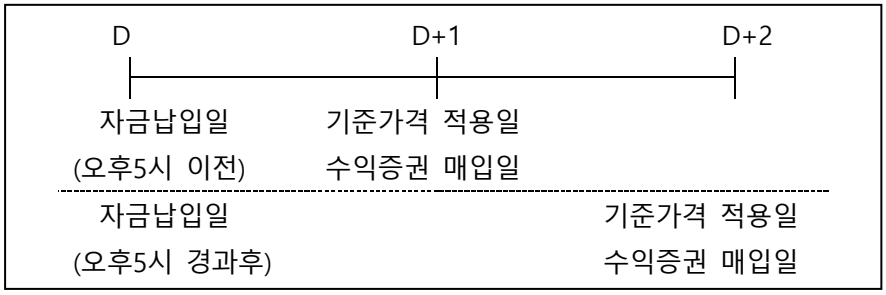

※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①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도나 환매에 따라 수취한 결제대금으로 결제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②수익자가 급여 등 정기적으로 받는 금전으로 수취일에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매입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2영업일(D+1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2영업일(D+1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나)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영업일(D+2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3영업일(D+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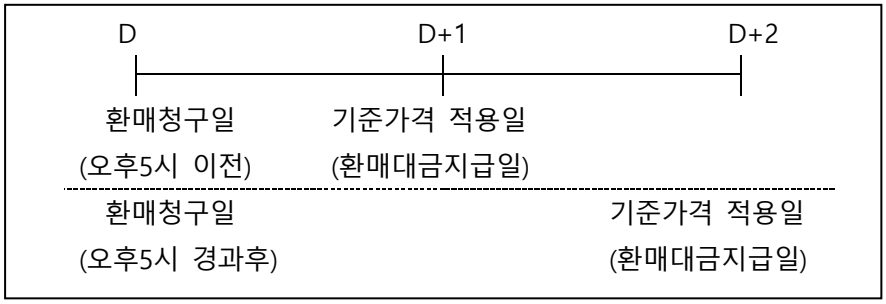

※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다)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매청구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환매청구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①수익자가 금융투자상품 등의 매수에 따른 결제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②수익자가 공과금 납부 등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환매하기로 판매회사와 미리 약정한 경우

3) 환매수수료 :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은 환매청구일 오후 5시 이전까지만 가능합니

다. 다만, 오후 5시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청구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A.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 (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하는 경우에는 전 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B.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①또는 ③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 해당사항 없음

12. 기준가격의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 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1,000 좌 단위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에 따라 계산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 그 차이가 1,000 분의 5 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 게시합니다. (단 국경일 등 공휴일 제외)
공시방법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로 계산하여 공시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판매회사・협회(www.kofia.or.kr)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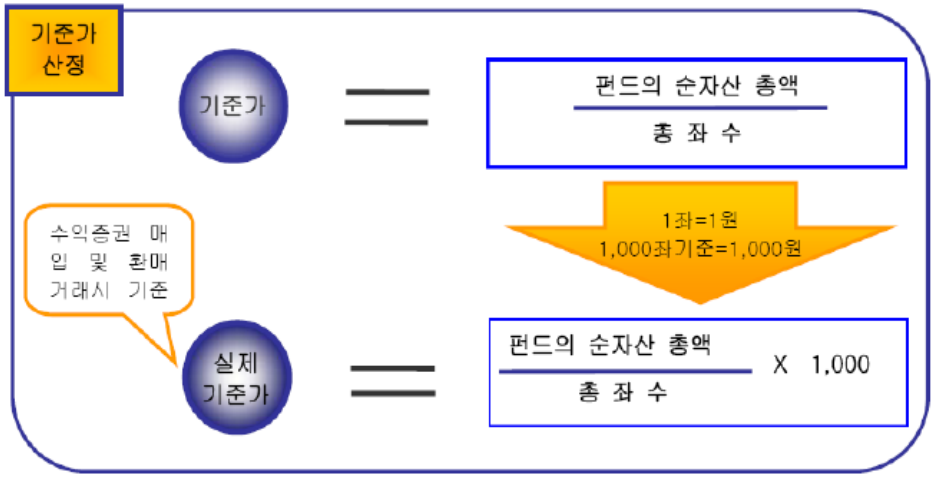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이 투자신탁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집합투자재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채무증권	취득원가와 만기액면가액의 차이를 상환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유효이자율(채무증권의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현금유입액의 현재가치를 최초로 취득할 당시의 취득원가에 일치시키는 이자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할인 또는 할증차

	금의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따라 상각하여 취득원가와 이자수익에 가감하여 산정한 가격
채무증권 외의 자산	취득원가에 평가일 현재까지 발생한 이자수익을 더하여 산정한 가격

2) 집합투자업자는 1)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시가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1,000분의 5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 투자신탁재산의 가격을 조정하거나 매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을 시가 또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 평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채무증권	상장채무증권(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 월간 계속 매월 10 일 이상 유가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한다)의 평가는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 채무증권	비상장채무증권(위의 상장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어음 등 및 양도성예금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또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4) 상기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의 12항에 따른 안정적 자산 비중이 30%이하인 경우 나. 투자제한의 12항 각 호의 자산 외의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안정적 자산 비중이 3영업일 연속 30%이하가 된 경우에는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260조제2항에 따른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가격으로 평가합니다.

①신탁계약서에 위기상황에서의 장부가격 평가 중단을 포함하여 선환매유인 관리 조치를 기재한 경우

②직전 10영업일 이내에 일시적·일회성 대량 환매대금의 지급이 발생한 경우

5) 선환매유인 관리조치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운용함에 있어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사전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산비율이 30%을 초과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잔존만기가 짧은 자산의

비중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방법 등을 활용하여 운용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장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의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해당 방안이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점검하여야 합니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이 발생하여 안정적 자산비중(30%)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집합투자재산 평가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에서 일시적인 대량환매 등으로 투자자간의 형평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환매를 일정기간 동안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당 기간 동안 안정적 자산 확보방안, 평가방법 변경(시가평가), 적용시점 등 향후 운용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환매 연기가 종료된 시점부터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 구분	수수료 율	부과기준
선취/후취 판매수수료	없음	매입시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시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집합투자업자 보수	0.0380	매3개월
판매회사 보수	0.0400	
수탁회사 보수	0.0120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0.0100	
총보수	0.1000	
기타비용	0.0046	사유발생시
총 보수·비용	0.1046	-
(동종유형 총보수)	-	-
총보수・비용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	0.1046	-

증권거래비용	0.0083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7.02 ~ 2023.07.01]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바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2.07.02 ~2023.07.01]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이외에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5)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증권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 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감사보수, 채권평가보수, 펀드평가보수, 펀드결제수수료, 지수사용료, 해외거래예탁비용, 해외원천납부세액, 보관대리인보수, 법률자문비용, 부동산감정평가보수, 부동산관리비용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기타비용	52,579

※ 증권거래비용은 다음과 같은 비용을 포함합니다. 단 세부 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국내주식매매수수료, 국내채권매매수수료, 장내파생매매수수료, 기타매매수수료, 콜중개수수료, swap 매매수수료, 대차거래비용(대차관련수수료), repo 거래비용(repo 수수료), 해외주식매매수수료, 해외채권매매수수료, 해외수익증권 매매수수료, 해외파생 등 매매수수료, 해외워런트 등 매매수수료 등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증권거래비용	94,342

※ 금융비용은 상기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을 제외한 이자비용 등이 있으며,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금액(직전 회계기간 중 발생내역, 단위 : 천원)
금융비용	-

< 1,000만원을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

[단위 : 천원]

투자기간	1년	2년	3년	5년	10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	22	34	59	13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	22	34	59	13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매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배분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익증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환급세액 = 외국납부세액 × 환급비율*

*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단, 환급비율 >1 이면 1, 환급비율 <0 이면 0으로 함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 (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4기(2022.07.02 - 2023.07.01)	진성회계법인	적정
제 3기(2021.07.02 - 2022.07.01)	진성회계법인	적정
제 2기(2020.07.02 - 2021.07.01)	진성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재무상태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23.07.01)	(2022.07.01)	(2021.07.01)
운용자산	1,902,234,169,558	1,427,986,753,950	941,482,232,461
증권	1,445,193,866,062	1,348,015,513,854	906,408,857,006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457,040,303,496	79,971,240,096	35,073,375,455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14,381,630,351	6,364,840,778	2,632,010,153
자산총계	1,916,615,799,909	1,434,351,594,728	944,114,242,614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285,890,487	259,801,911	160,108,228
부채총계	285,890,487	259,801,911	160,108,228
원본	1,857,074,340,287	1,418,020,306,990	938,134,094,210
수익조정금	24,638,782,762	-5,941,667,325	369,456,059
이익잉여금	34,616,786,373	22,013,153,152	5,450,584,117
자본총계	1,916,329,909,422	1,434,091,792,817	943,954,134,386

[단위 : 원, %]

손익계산서			
항 목	제 4기	제 3기	제 2기
	(2022.07.02 - 2023.07.01)	(2021.07.02 - 2022.07.01)	(2020.07.02 - 2021.07.01)
운용수익	35,882,700,552	24,092,775,979	6,462,818,407
이자수익	35,312,732,700	24,738,715,301	9,093,642,550
배당수익	0	0	0
매매/평가차익(손)	569,967,852	-645,939,322	-2,630,824,143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1,265,914,179	2,079,622,827	1,012,234,290
관련회사 보수	1,022,945,463	1,653,354,353	800,661,301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242,968,716	426,268,474	211,572,989
당기순이익	34,616,786,373	22,013,153,152	5,450,584,117
매매회전율	0.00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 3) "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백만원, %)

구분	당기(2022.07.02 - 2023.07.01)			전기(2021.07.02 - 2022.07.01)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거래 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주식이외의증권(채권등)						
부동산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기타(REPO,대차,콜 등)	43,770,600	94.3422	0.0002	75,715,200	168	0.0002
합계	43,770,600	94.3422	0.0002	75,715,200	168	0.0002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주, 백만원,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기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 (B)	매매회전율(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0	0	0	0	0	0	0.00

(주 1)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공하는 최근 자료를 활용합니다. (기준일 : 2023.08.03)

(주2) 동종유형이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및 일반공모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자본시장법 제229조에 따른 5가지 종류의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하며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재무상태표

[단위:원]

과 목	제4기(2023.07.01)		제3기(2022.07.01)		제2기(2021.07.01)	
	금	액	금	액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457,040,303,496		79,971,240,096		35,073,375,455
1. 현금및현금성자산	76,266,541		91,119,936		73,375,455	
2. 예치금	456,964,036,955		79,880,120,160		35,000,000,000	
3. 증거금						
대출채권		733,376,251,141		775,729,824,740		398,926,428,861
1. 콜론	70,000,056,000		50,000,080,000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279,300,000,000		241,400,000,000		137,800,000,000	
3. 매입어음	384,076,195,141		484,329,744,740		261,126,428,861	
4. 대출금						
유가증권		711,817,614,921		572,285,689,114		507,482,428,145
1. 지분증권						
2. 채무증권	711,817,614,921		572,285,689,114		507,482,428,145	
3. 수익증권						
4. 기타유가증권						
파생상품						
1. 파생상품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14,381,630,351		6,364,840,778		2,632,010,153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 정산미수금						
3. 미수이자	14,381,630,351		6,364,840,778		2,632,010,153	
4. 미수배당금						
5. 기타미수입금						
6. 기타자산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916,615,799,909		1,434,351,594,728		944,114,242,614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285,890,487		259,801,911		160,108,228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 정산미지급금						
3. 해지미지급금						
4. 수수료미지급금	285,890,487		259,801,911		160,108,228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부 채 총 계		285,890,487		259,801,911		160,108,228
자 본						
1. 원 본	1,857,074,340,287		1,418,020,306,990		938,134,094,210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59,255,569,135		16,071,485,827		5,820,040,176	
(발행좌수 당기: 1,857,074,340,287 좌	이익잉여금	34,616,786,373		22,013,153,152		5,450,584,117
전기: 1,418,020,306,990 좌	수익조정금	24,638,782,762		-5,941,667,325		369,456,059
전전기: 938,134,094,210 좌)						
(기준가격 당기: 1,000.00 원						
전기: 1,000.00 원						
전전기: 1,000.00 원)						
자 본 총 계		1,916,329,909,422		1,434,091,792,817		943,954,134,386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916,615,799,909		1,434,351,594,728		944,114,242,614

다. 손익계산서

[단위:원]

과 목	제4기(2022.07.02-2023.07.01)		제3기(2021.07.02-2022.07.01)		제2기(2020.07.02-2021.07.01)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35,312,732,700		24,738,715,301		9,093,642,550
1. 이 자 수 익	35,312,732,700		24,738,715,301		9,093,642,550	
2. 배당금수익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984,354,645		499,943,410		64,381,340
1. 지분증권매매차익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918,841,586		444,369,282		26,925,03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4. 지분증권평가차익						
5. 외환거래/평가차익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65,513,059		55,574,128		2,020,652	
7. 기타거래차익					35,435,651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414,386,793		1,145,882,732		2,695,205,483
1. 지분증권매매차손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283,858,835		1,113,823,314		2,679,987,797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4. 지분증권평가차손						
5. 외환거래/평가차손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82,831,485		29,707,310		10,395,033	
8. 기타거래손실	47,696,473		2,352,108		4,822,653	
운 용 비 용		1,265,914,179		2,079,622,827		1,012,234,290
1. 운용수수료	431,909,735		698,082,412		338,056,552	
2. 판매수수료	454,642,050		734,823,834		355,849,207	
3. 수탁수수료	136,393,678		220,448,107		106,755,54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242,968,716		426,268,474		211,572,989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34,616,786,373		22,013,153,152		5,450,584,117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18640496		0.015523863		0.00581002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22.07.02 - 2023.07.01	14,180	14,180	66,909	67,878	62,518	63,241	18,571	19,163
2021.07.02 - 2022.07.01	9,381	9,381	130,517	131,159	125,718	126,419	14,180	14,341
2020.07.02 - 2021.07.01	8,366	8,366	63,218	63,451	62,203	62,432	9,381	9,440

(주1)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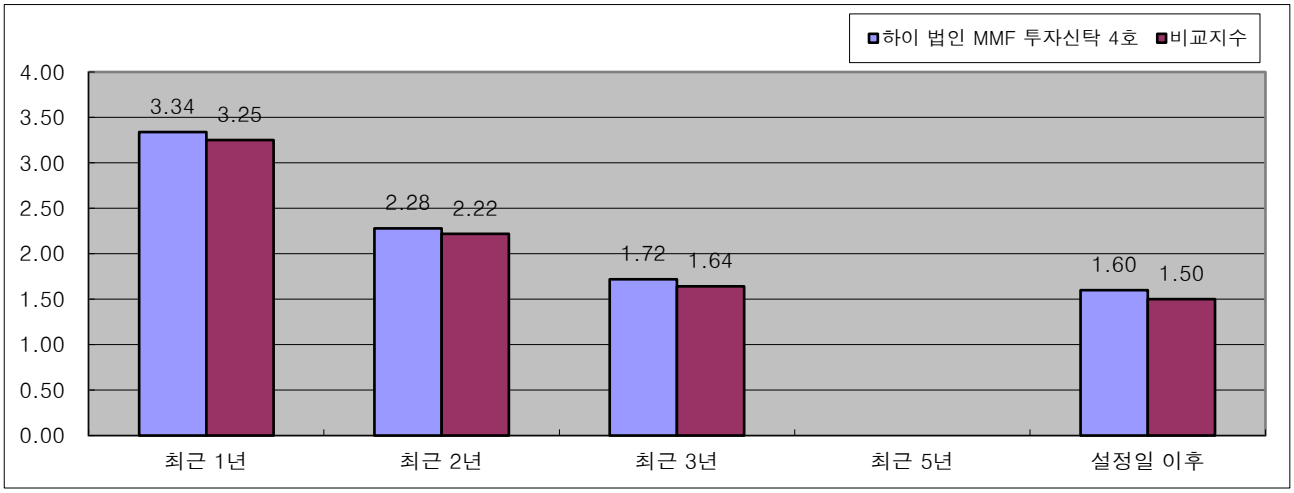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2.08.01 ~ 23.07.31	21.08.01 ~ 23.07.31	20.08.01 ~ 23.07.31	-	19.07.02 ~ 23.07.31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3.34	2.28	1.72		1.60
비교지수	3.25	2.22	1.64		1.50
수익률변동성(%)	0.06	0.15	0.17		0.15

(주 1) 비교지수 : (1 * [CALL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5)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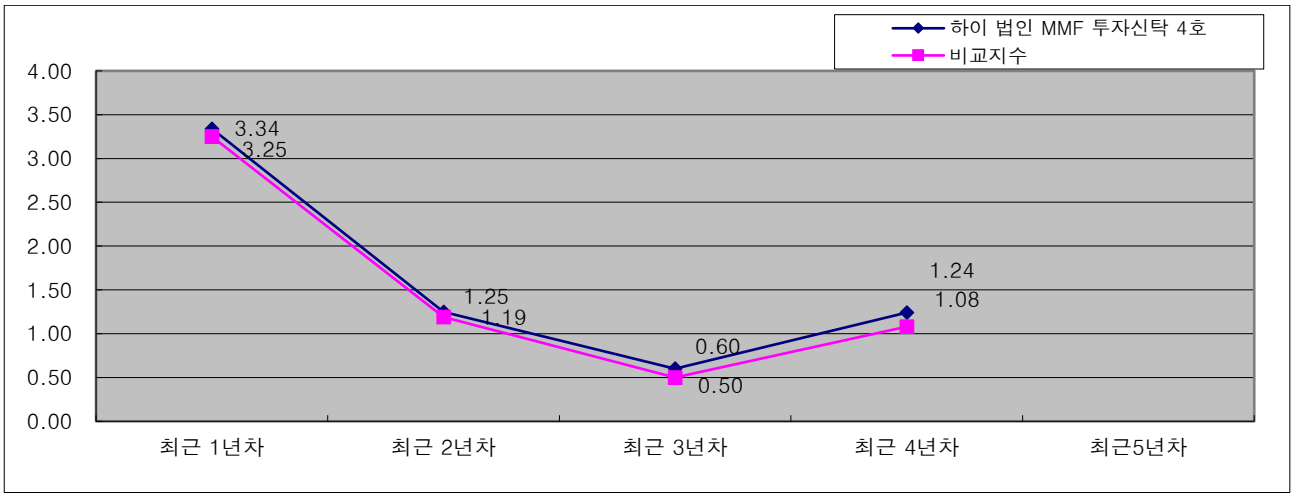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22.08.01 ~ 23.07.31	21.08.01 ~ 22.07.31	20.08.01 ~ 21.07.31	19.08.01 ~ 20.07.31	19.07.02 ~ 19.07.31
하이 법인 MMF 투자신탁 4호	3.34	1.25	0.60	1.24	
비교지수	3.25	1.19	0.50	1.08	

(주 1) 비교지수 : (1 * [CALL금리])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 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 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 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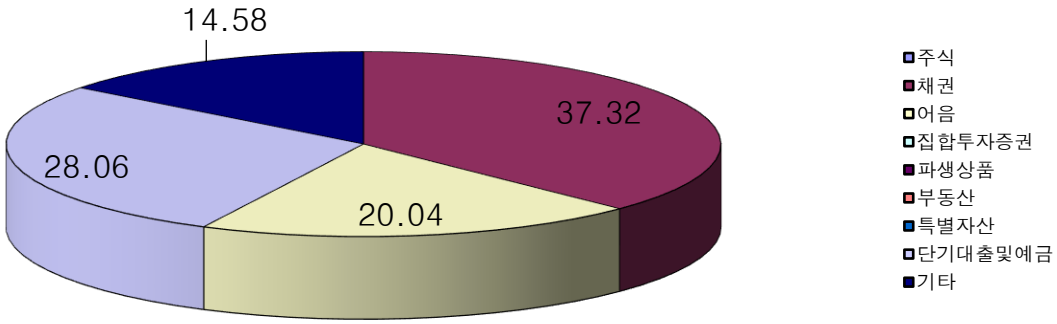

[2023.07.01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7,152	3,841	0	0	0	0	0	0	5,378	2,795	19,166
	(0.00)	(37.32)	(20.04)	(0.00)	(0.00)	(0.00)	(0.00)	(0.00)	(0.00)	(28.06)	(14.58)	(100.00)
합계	0	7,152	3,841	0	0	0	0	0	0	5,378	2,795	19,166
	(0.00)	(37.32)	(20.04)	(0.00)	(0.00)	(0.00)	(0.00)	(0.00)	(0.00)	(28.06)	(14.58)	(100.00)

(주 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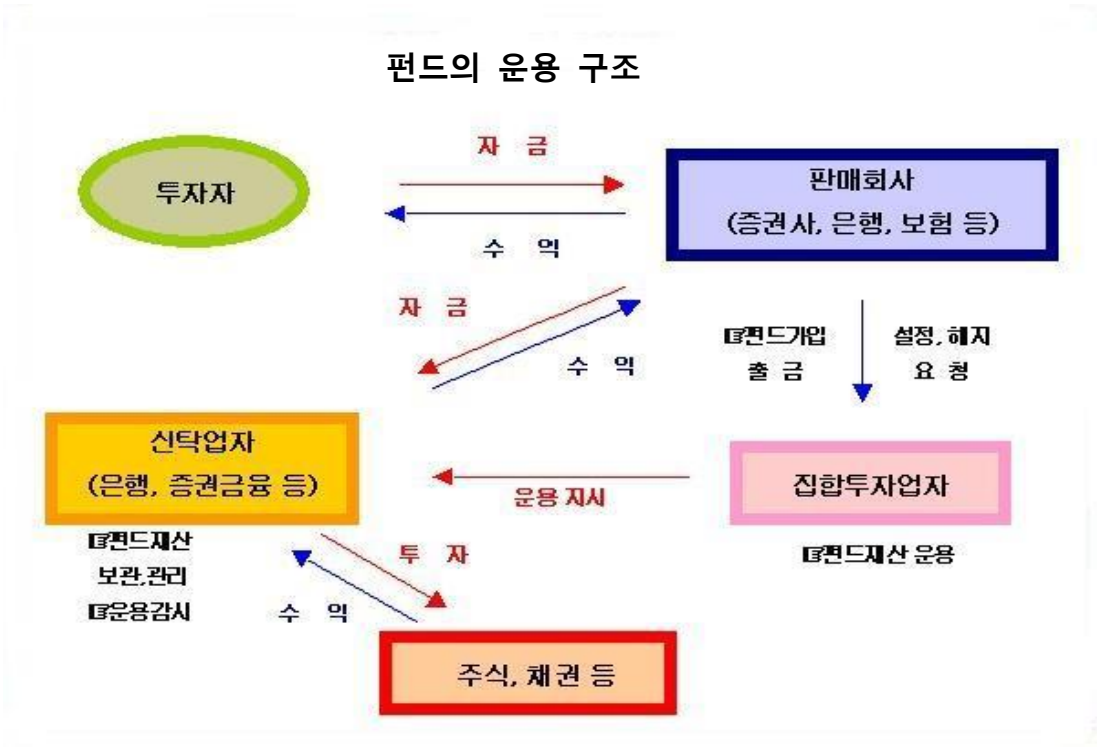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이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교보증권빌딩 14층 (연락처 T. 02. 707-4200, 인터넷 홈페이지 www.hi-asset.com)
회사연혁	2000년 3월 회사설립(델타투자자문) 2008년 8월 자산운용회사 전환 2008년 8월 LS자산운용㈜ 상호 변경 2016년 10월 대주주 변경으로 인한 DGB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8월 하이자산운용㈜ 사명 변경 2021년 10월 블랙록자산운용㈜ 국내 공모 집합투자업 사업부문 분할합병
자본금	191.7억원
주요주주현황	DGB금융지주(100%)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투자신탁의 설정.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선관의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3) 책임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 백만원]

요약 재무상태표			요약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2022.12.31	2021.12.31	계정과목	2022.1.1 ~ 2022.12.31	2021.1.1 ~ 2021.12.31
현금및예치금	1,241	14,072	영업수익	19,072	16,086
유가증권	67,431	21,872	영업비용	12,459	9,554
대출채권	100	-	**영업이익**	**6,613**	**6,532**
유형자산	626	885	영업외수익	11	16
기타자산	8,403	8,551	영업외비용	15	28
자산총계	**77,801**	**45,380**	경상이익	6,609	6,520
기타부채	7,961	5,419	법인세비용	1,690	1,468
부채총계	**7,961**	**5,419**	**당기순이익**	**4,919**	**5,052**
자본금	19,173	11,000			
자본잉여금	30,968	9,186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			
이익잉여금	19,698	19,776			
자본총계	**69,839**	**39,962**			

라. 운용자산 규모

[2023.07.31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1,277	19,553	1,660	0	3,641	5,543	0	2,216	1,779	190	40,744	76,60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기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가. 신탁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증권금융㈜
주소·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0(여의도동 34-9) (연락처 T. 02. 3770-8800, 인터넷 홈페이지 www.ksfc.co.kr)
회사연혁	1955년 설립 2002년 신탁업무 개시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①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②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③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④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⑤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⑥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⑦ 투자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⑧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⑨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

① 신탁업자가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③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3) 책임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4)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신한펀드파트너스
주소·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2길28 18,19,20층 (연락처 T. 02. 2168-0400)
회사연혁	2000년 설립
홈페이지	www.shinhanfundpartners.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의무와 책임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자산평가(주)	나이스피앤아이(주)	KIS 자산평가(주)	(주)에프앤자산평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4 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 길 19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 길 38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 2 로 61 2 층,3 층
연락처	02-2251-1300	02-398-3900	02-3215-1400	02-721-5300
홈페이지 주소	www.koreabp.com	www.nicepni.co.kr	www.bond.co.kr	www.fnpricing.com
회사연혁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홈페이지 참조

(2)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 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8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법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단,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⑥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⑥-2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⑦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⑧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⑨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⑩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사항

(4) 반대매수 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 제188조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 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②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1)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 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 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투자자의 주소지 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투자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1)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 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결의
3) 투자신탁의 피 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6항에 따라 인정하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상기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 제87조제8항제1호·제2호에 따른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를 적은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2) 자산운용보고서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자산운용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 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신탁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관·관리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및 명령에 따른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아래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www.hi-asset.com),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상기의 수시공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③ 법시행령 제93조 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⑤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⑧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 기구로 한정합니다)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 될 수 있다는 사실

⑨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⑩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
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
다.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라.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⑪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②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기준

구 분	선 정 기 준

선정원칙	1. 회사는 거래 중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 하여야 한다. 2. 회사는 중개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조사분석서비스에 한하여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회사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여 조사분석서비스의 이용대가를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3. 회사는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조사분석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게 된 편익에 비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평가항목	1. 채무증권 및 채무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시장 정보의 정확성 및 적시성 ② 세미나 및 리서치 제공 ③ 발행 등 시황의 유용성 ④ 호가 경쟁력, 호가 대응 신속성 및 체결율 ⑤ 결제 프로세스의 정확성 2. 상장지분증권 및 상장지분증권 관련 장내파생상품 거래 중개회사 ① 리서치 제공 능력 ② 매매 실행 능력 ③ PT 및 세미나 ④ 기업 탐방 ⑤ 시장 정보 제공

주1) 각 항목별 평가항목 등은 관련 법규 또는 당사 내부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투자에 관한 사항

(기준일 : 2023.07.31)

가. 투자목적 :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자산 운용수익 제고
나. 투자금액 : 약 144억원(집합투자업자의 단기유동자금운용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다. 투자기간 : 설정일 이후부터 1년 이상
라. 투자금 회수계획 : 단기자금 수시입출금 예정
바. 투자시기 :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

6.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추가기재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의 정의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수익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름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